

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13호

2026년 4월 3일 (금)

차 례

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고시 제2026-13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
- 파주시 고시 제2026-136호 소하천점용허가 고시 2
- 파주시 고시 제2026-140호 불법성토농지 사고지 해제 고시 3
- 파주시 공고 제2026-1082호 건축협정 인가공고 4

회									
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파주시장

하천명	점용자	점용자 주소	목적·개요	점용위치	면적 (㎡)	점용기간
운천천	문산읍장	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	야외운동기구 설치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697-1 외 1필지	9	'26.03.19.~ '30.12.31.
문산천	한국전력공사 파주시사	파주시 금바위로 60	전주설치	경기도 광탄면 마장리 382	0.128	'26.03.19.~ '30.12.31.
눌노천	법원읍장	파주시 사임당로907번길 21	마을정원 조성	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640-1 외 6필지	1,116	'26.04.01.~ '26.12.31.
고산천	경기도지사	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	도로구역결정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500-1 외 25필지	1,900	'26.03.26.~ 영구

소하천점용허가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일

파주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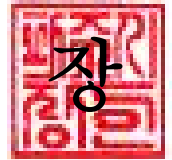
하천명	점용자	점용자 주소	목적·개요	점용위치	면적 (㎡)	점용기간
지내울천	한국전력공사 파주시사	파주시 금바위로 60	전주설치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33-1	0.78	'26.01.14.~ 30.12.31.
호주울천	한국전력공사 파주시사	파주시 금바위로 60	전주설치	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24-1 외 1필지	1.04	'26.02.26.~ 30.12.31.
지내울천	갑00설	파주시 아동로 116	배수관로설치	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184-1	2	'26.02.05.~ '30.12.31.
초리골천	우0제	파주시 법원읍 초리골길 138-17	배수로설치	경기도 파주시 법원 법원리 164-2	2	'26.03.01.~ '30.12.31.
기산천	파주시장	파주시 시청로 50	보도설치	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658-1 외 10필지	343	'26.02.25.~ '30.12.31.
장산천	한00000 연구원	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	지하수위 관측정 설치	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722	1	'26.02.25.~ '30.12.31.
망굴천	김0철	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05	암거설치	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152-1 외 1필지	90	'26.03.26.~ '30.12.31.

불법성토농지 사고지 해제 고시

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 같은조례 제20조의 4에 따라 불법으로 농지성토된 토지의 형질변경 “사고지”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고지 해제 필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4월 03일

파 주 시 장



1. 고시취지: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형질변경(절·성토 등)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지로 등재된 진동면 서곡리 328,328-1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「파주시 도시계획조례」제20조의 3,4에 따라 사고지 해제함

2. 사고지 조서(지역·지구 등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등)

구분	명칭	위치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1	사고지 내용 삭제	진동면 서곡리	328	전	4,099	원상회복 완료
2			328-1		2,017	

3. 고시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: 고시일로부터

4.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 : 원상복구 완료시

5. 사고지 도면 및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“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자치 법규에 따라 지역·지구 등의 범위가 지정되는 경우로 지형도면자료 생략

건축협정 인가공고

파주시 다울동 1037-5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협정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7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4. 3.

파 주 시 장

1. 명 칭 : 파주시 다울동 1037-5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
2. 목 적 : 건축협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
3. 대지위치 : 다울동 1037-5, 1037-6
4. 유효기간 : 건축협정 폐지 시까지
5. 협정내용 : 건축법 제77조의13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
 - 조경, 부설주차장 등 부대시설 통합
 - 건폐율, 용적률 통합
 - 지하층의 설치
 - 맞벽건축의 구조 및 형태
 - 계단 및 E/V 등 공용부 통합 설치
 - 건축설비(전기, 통신, 상하수도 등) 통합
6. 게시장소 : 파주시 홈페이지
7. 기 타 :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허가3과(☎031-940-8781)에서 열람 가능. 끝.